

1. 의결주문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592호, 2026. 4. 28. 공포, 2027. 2. 1. 시행 및 법률 제21749호, 2026. 6. 2. 공포, 2026. 12. 3. 시행)됨에 따라,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며,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 고시 방법 및 인·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구성·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

- 1)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고시 방법 등 마련(안 제19조제3항·제4항)

- 2) 국가유산청장의 인·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 마련(안 제20조제1항·제2항)
- 3)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(안 제23조의2, 안 제23조의3)
- 4)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업무 중 위탁업무 마련(안 제23조의4)

나.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

- 1) 분과위원회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변경(안 제5조제1항·제2항)
- 2)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가 출범함에 따라 ‘시·도지사’에 ‘통합특별시장’ 추가(안 제15조제3항, 제2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역사문화권별로 두며,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10명 이내”를 “15명 이내의 법 제6조제3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2항제13호”를 “법 제17조제2항제14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”를 “국가유산청장은”으로, “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공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·도”를 “관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”을 “국가유산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·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”를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 또는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등) 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,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임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

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서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③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장이 임면한다.

④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의3(진흥원 이사회)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
·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진흥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.

③ 진흥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3조의4(업무 등의 위탁)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1조
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
시행자,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·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유산청장이 인·허가 의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	제5조(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는 <u>역사문화권별로 두며,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	① ----- ----- 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 <u>15명 이내의 법 제6조제3항제1호</u> ----- -----.
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 <u>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<u><후단 삭제></u>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행위 등의 제한) ① · ② (생략)	제15조(행위 등의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<u>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</u> 에게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</u> -----

을 통보해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6조(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9조(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 · 도”라 한다)의 공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 ·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
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7조제2항제14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유산청장은 -----

----- 관보
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-----

-----.

<삭 제>

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0조(인·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(이하 “인·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·허가 의제 협의회(이하 “인·허가의제협의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·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·허가의 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·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인·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

제21조(지정취소 등의 고시) 국가
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
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
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

제20조(인·허가 의제 협의회의
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 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, stacked vertically from top to bottom. Each set consists of a solid top line, a dashed middle line, and a solid bottom lin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

②

국가유산청장

제21조(지정취소 등의 고시) 국가
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통합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
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

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 또는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<신 설>

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, 국가유산청 또는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3조의2(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등) 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,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 2. 명칭
 3. 주된 사무소
 4. 임직원에 관한 사항
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9. 내부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10. 공고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

<신 설>

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서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③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장이 임명한다.

④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의3(진흥원 이사회)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진흥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.

③ 진흥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3조의4(업무 등의 위탁) 국가
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
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
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
에 관한 업무를 시행자, 재단 또
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